

# 2019년도 제22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0. 22.(화요일), 11:00
- 장 소 : 보호원 9층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임진모, 전용준(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7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179건(안건번호 제2019-134975호~13760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19-134975호, 134976호 일본 애니메이션의 한 화 전체분량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 안건번호 제2019-134977호~134979호 권리자가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을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 안건번호 제2019-134982호 판매 중인 소설의 불법복제물을 밴드에서 제공한 사안, 안건번호 제2019-137608호 구글드라이브에 저장된 국내 드라마로 연결되는 직접링크(direct link)를 설정한 사안은 모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안건번호 제2019-134980호는 영화상영관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1장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영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진 1장만으로는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결함
  - 안건번호 제2019-134981호 자막공유사이트에서 최신 영화의 자막파일을 제공한 사안은 권리자가 시정 조치를 원하는 점, SMI 형식의 자막파일은 영화 불법복제물 이용을 촉진하는 점, 게시자가 직접 번역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나머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5,170건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27회 저작권보호 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19-21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5쪽의 블로그 게시판명이 드러난 부분의 처리에 대하여 의견을 구함
- A 위원 : 게시판명을 공개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자는 의견임
- B 위원 : 동의함
- C 위원 : 이견이 없음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게시판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134975호~137608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5,179건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34975호~134976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한화 전체 분량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안건번호 제2019-134975호 게시물은 우리말 자막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말 번역 및 자막 제작자에 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음  
안건번호 제2019-134976호 게시물의 동영상 재생 횟수는 129,061회임  
위 게시자는 다수의 해외 애니메이션 영상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34975호~13497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일본 애니메이션의 한화 전체분량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이견 없이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A 위원 :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의견임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34975호~13497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제2019-134977호~13497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34977호~134979호는 모두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권리자가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을 웹하드에 서 판매한 사안임
- B 위원 :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으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해당 대중가요를 작사 또는 작곡한 저작자와 실연자의 복제·전송권 등이 침해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 해당 게시물이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의견에 찬성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34977호~13497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3498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의 국민신문고 신고 내용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34980호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건으로, 카페 이용자가 최신 인기영화 ‘조커 (2019)’의 한 장면을 게시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이 사진 1장을 촬영하는 행위가 법 제104조의6에서 금지하는 “녹화”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설령 심의대상 게시물의 사진 1장 촬영이 “녹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이라 볼 수 있는지 의문임
- B 위원 : 우리 저작권법상 복제 용어정의에서 사진 촬영과 녹화를 구분하고 있고, 본 사안은 ‘녹화’가 아닌 ‘사진 촬영’에 불과하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게시글 본문에 사진 1장 이외에 다른 내용이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게시 화면을 제시하면서)사진 1장과 대사 한 줄이 있음
- C 위원 :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고 사진 촬영물의 비평적 요소가 다소 적기는 하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없고 단순 복제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사진 1장을 게시한 것으로 이 사실만으로는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의 없이 부결하는 것에 동의

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37980호는 게시물에 대한 시정 조치 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3498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34981호는 권리자의 요청으로 보호원이 자막공유사이트를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임  
우리 심의위원회는 동영상 없이 우리말 자막파일만 제공되는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기로 의결한 바 있음  
본 사안은 자막공유사이트 이용자가 2019. 5. 29. 개봉한 영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2019)'의 전체 분량의 한글자막을 파일(smi) 형태로 첨부한 것임  
게시물의 본문 내용에 비추어 보아 게시자가 직접 우리말로 번역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고, SMI 파일로 제공되는 자막파일은 특정 불법 복제물(영상)을 전제로 하여 음성과 자막을 싱크하므로 복제·전송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C 위원 : 권리자가 시정 조치를 희망할 뿐 아니라 최신 영화이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B 위원 : 이견 없이 동의함
  
- A 위원 : 게시자가 직접 번역했을 가능성이 낮아 보여 가결하는 것에



이견이 없음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3798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3498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34982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판매 중인 소설을 밴드에서 제공한 사안임  
심의위원회는 밴드에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라면 해당 밴드의 특성을 종전과 같이 고려하지 아니하고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논의한 바 있음  
해당 저작물은 현재 콘텐츠 플랫폼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고, 단행본으로 판매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시정조치를 권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B 위원 :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권리자가 시정 조치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A 위원 :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37982호는 게시물

- 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3760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37608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구글드라이브에 저장된 국내 드라마로 연결되는 직접링크(direct link)가 설정되어 있음  
링크설정행위가 민사적인 의미에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되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링크설정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될 수 있음
  - B 위원 : 전문위원 검토 의견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C 위원 : 심의위원회가 직접링크에 대해 시정권고의 타당성을 긍정하고 있으므로 가결하는 것에 이견이 없음
  - A 위원 : 또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 의견임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3760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34983호~13760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19-134983호~137607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35830호는 웹하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실사 영화 '라이온 킹 (2019)'임

이번 주 심의 대상에서 많이 보이고 있으며, 권리자는 월트디즈니사임

안전번호 제2019-136057호는 웹하드에서 국내 영화 '타짜: 원 아이드 잭 (2019)'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안전번호 제2019-136067호는 밴드에서 '타짜: 원 아이드 잭 (2019)'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안전번호 제2019-136115호는 웹하드에서 최근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 '양자물리학 (2019)'을 판매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19-136211호는 최근 인기있는 영화인 '조커 (2019)'를 웹하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안전번호 제2019-137364호 웹하드에서 지난 주에 종영한 우리나라 드라마 '우아한 가(2019)'를 판매하고 있음

- B 위원 : 데드카피 불법 전송 사안이므로 이견 없이 동의함

- C 위원 :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A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 방송 프로그램, 게임, 만화, 출판물 등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34983호~13760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34980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19-134975호~134979호, 안전번호 제2019-134981호~137608호의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4. 폐회 선언

- o 전용준 분과위원장이 제22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2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0. 29.

분과위원장 전용준

위원 임진모

위원 박성호